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 법·제도 동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과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2개의 하위규정이 5월 2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입니다.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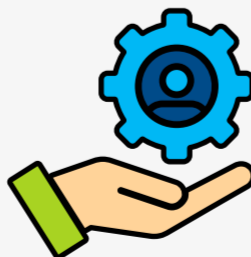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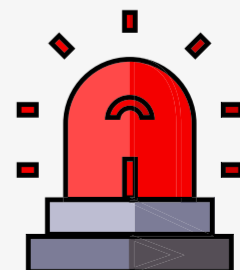
### 외부감사·회계 관련 규정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 내실화”



### 회계부정 신고·포상 관련 규정 개정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유도”



\*본 카드뉴스의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삼정KPMG는 이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등에 필요 시 반드시 유권기관의 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조정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 시, 기업 부담 상승**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천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

**내부회계관리구축·운영 의무 검토 대상 및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천억원)이 그대로 적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 내실화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0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

02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정비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금융감독원

#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 강화

이

## 자진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다음의 3가지 감면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감경

-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 강화

02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다음의 2가지 방안을 통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유도

- ☑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 명료화
- ☑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으로 확대
  - 등급별 기준금액 대폭 상향
  -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 최소화

(\*)포상금 산정액 = 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 × 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본 카드뉴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 하단의 **건의·문의** 탭을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삼성KPMG ACI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